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무원(전문임기제)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최 종 합 격 자	
		응시번호	성 명
정책 개발·조정·평가	전문임기제 나급	A10	최 ○ ○

2.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가. **등록기간: 2026.8.3.(월) ~ 2026.8.10.(월)**

나. 등록방법: 제출서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로 제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06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채용담당)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등기우편(원본) 및 이메일*(스캔본) 제출

* 이메일 주소: eomseoyoung@korea.kr

다.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 ①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단면작성) 2부 <서식 1>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3>
- ④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4>
- 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⑧ 반명함판 사진파일 ※ 담당자 메일로 별도 제출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채용후보자 등록,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02-2100-1220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소재지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석사·박사 또는 졸업·중퇴·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 병적자료(병무청) ▪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4]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제청 등)
 -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寛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